

1. 住宅分讓價 原價連動制上の 建築費 上限價格 調整

資料提供：建設部

○ 원가연동제상의 건축비 상한가격을 평균 6.3% 인상('92. 1. 1 시행)

〈조정원칙〉

—표준품셈에 따른 91. 11월 현재의 평당 건축비 산정

- 자재비: 건설협회 발행 “거래가격”지 기준
- 노무비: '91년 정부노임에 “거래가격”지에 기재된 90. 4/4분기 대비 '91. 2/4분기까지의 시중노임상승율을 가산

—총 산출금액 135.6만원중 6천원을 원가절감하고 135만원으로 조정

(건축비 25.7평, 15층 이하 비목별 내역)

	현 행	조 정	
		금 액	대 비
계	127.0만원	135.0	6.3
자 재 비	45.8	47.8	4.4
노 무 비	42.0	45.5	8.3
기 타 경 비	39.2	42.3	5.4

〈조정내역〉

단위: 만원/3.3㎡(평)

구 분	층 별	건축비 상한가격
전용면적 18평(60㎡) 이하	15층 이하	131
	16층 이상	147
전용면적 18평(60㎡) 초과 25.7평(85㎡) 이하	15층 이하	135
	16층 이상	152
전용면적 25.7평(85㎡) 초과	15층 이하	139
	16층 이상	157

※ 참고 : 건축비조정에 따른 주택분양가 변동

- 평촌 신도시의 예

(단위: 만원, 15층 이하 기준)

분양면적	구 분	현 행		조 정		
		분양가	평당가격	분양가	평당가격	인상율(%)
21평 (전용 16.2평)	계	3,486	166	3,696	176	6.0
	건축비	2,583	123	2,751	131	
	택지비	903	43	945	45	
32평 (전용 25.7평)	계	5,440	170	5,760	180	5.9
	건축비	4,064	127	4,320	135	
	택지비	1,376	43	1,440	45	
38평 (전용 30.8평)	계	7,106	187	7,524	198	5.9
	건축비	4,978	131	5,282	139	
	택지비	2,128	56	2,242	59	